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289 제출연월일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나 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사인(私人)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부대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1조를 삭제한다.

제94조 전단 중 "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"을 "제89조, 제90조, 제92조 및 제93조"로 한다.

제9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08조 중 "제90조부터 제93조까지"를 "제90조, 제92조, 제93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부대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) 부대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는 종전의 제9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제91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다.
 - 1.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자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경우: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 이 개정·시행될 때까지
 - 2.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자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경우: 지방자치단체별로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가 제정·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
- 제3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1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에 대한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68조제6항제2호 중"「도로법」 제91조"를 "「수도법」 제71조"로 한다.
 -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
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2조제2항 중 "제89조부터 제91조까지"를 "제89조, 제90조"로 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 1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한 부담금(종전의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)에 대한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행 개 정 제90조(부대공사의 비용) ① • ② | 제90조(부대공사의 비용) ① • 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 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도 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 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부대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 <신 설>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삭 제> 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 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 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

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 인의 부담으로 한다.

-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 방자치단체의 장, 「보험업법」 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」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.
- 1. 이름(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)

및 주소

- 2. 주민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
- 3. 자동차등록번호 · 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· 이전 · 말소에 관한 정보
- 4.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 제 등의 가입 여부
-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,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제94조(비용의 징수 방법 등) 제 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이경우 "점용료"는 각각 "비용을 부담하여야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"으로 본다.

제95조(점용료 등의 귀속) ① (생 ⁷ 략)

제94조(비용의	의 징	수 빙	-법	등)	<u>제</u>
89조, 제90	조, 저]]92조	및	제93	조
			とい		(- -1
제95조(점용)	료 등	의 귀	子)	(I) (연
행과 같음))				

- 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 로 귀속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
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
 비용: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
 5. (생 략)

제108조(도시·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) 제10조 각 호 에 열거된 도로 외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・군계 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 2조제2호 · 제9호, 제4조, 제31 조제1항, 제32조부터 제37조까 지, 제54조, 제55조,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, 제67조(제72조제4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), 제68조, 제69조(제72조 제4항,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70조(제72 조제4항, 제94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72조,

②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</u> 삭 제>
1
5. (현행과 같음)
제108조(도시・군계획시설 도로
등에 대한 준용)

제73조,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, 제81조,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, 제89조, <u>제90조부터 제93조까지</u>,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,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, 제106조, 제107조, 제111조, 제113조제1항제2호,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	제90조,	제92조,
제93조		

[별지 제1호서식]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・항(조제목)	주요내용	
	제91조제1항(원	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	
1		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	
	담 등) 삭제	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 삭제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	제91조제1항(원인	
1	자의 비용 부담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	등) 삭제	

2. 상세 사유

- 국민·기업에 부담이 되거나, 경제·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도 존속 중인 상황으로 부담금 제도 정비 필요
-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, 부과 실적도 미미함 * 최근 4년간 부담금의 연평균 징수 결정액: 207백만원

Ⅲ. 부대의견

O 해당없음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	도로관리과장	도로국장
최길성	안일찬	지동선	이우제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안일찬	044-201-3915	ilchan05@korea.kr